

청약 체크 포인트

※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도국제도시 F19-1블록 더샵송도센터니얼은 비투기과열지구·비청약과열지역·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수도권 거주자라면 (만 19세 이상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1순위 청약 조건 확인!

1순위 청약자격 요건 체크!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 하시면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수도권 거주자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만 19세 이상

재당첨 제한 없음!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하신 분은 추첨제로 청약신청 가능!)

세대주/세대원 구분 없이,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 신청 가능! (주택소유 여부 관계없이 다주택자도 청약가능!)

‘더샵 송도센터니얼’ 청약통장 예치기준 금액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지역

구분	인천광역시 (또는 기타 광역시)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더샵 송도센터니얼’ 청약통장 종류별 예치기준 금액

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모든면적 사용가능	전용면적 85㎡ 이하만 사용가능	모든면적 사용가능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 전환 시 가능 (※ 단, 변경한 청약저축은 다시 예금으로 전환불가)

구분	모집공고일 이전	모집공고일 당일	청약신청 접수일 당일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저축보유자 청약예금으로 전환 및 청약통장 예치금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이전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예치금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 충족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발생 시 차액 충족

※ 지역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기준이며, 청약 하고자 하는 지역기준이 아닙니다.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및 산정

과거주택 소유여부	만 30세 이전 결혼여부	무주택기간	비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분	만 30세 이전 결혼하지 않은 분	만 30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만 30세 이전 결혼한 분	혼인 신고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	만 30세 이전 결혼하지 않은 분	만 30세 ~ 무주택된 날	만 30세가 된 날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된 날 ~ 입주자모집공고일	
	만 30세 이전 결혼한 분	혼인 신고일 ~ 무주택된 날	혼인신고일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주택된 날 ~ 혼인 신고일	

※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만 30세 이전 혼인신고 시,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 한 아래와 같이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신청자와 동일세대 등재된 경우 : ①신청자의 배우자, ②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경우 : ①신청자의 배우자, ②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신청자의 직계비속(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거나 입주권 및 분양권 등(개정 시행일 2018.12.11. 이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로 봄.
(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봄)
- ※ 무주택기간 산정 시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무주택기간만으로 산정 함.(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양도일은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부양가족 인정기준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가족 산정 시 제외(직계존속의 배우자의 경우 계모, 계부 포함)

- 인정대상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를 포함) 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됩니다.

구분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	비고
	주민등록등본 계속등재기간	
배우자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	법정 배우자만 가능
미혼자녀	만 30세 미만 공고일 현재	기혼자녀는 무조건 불인정
	만 30세 이상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	
직계존속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신청자의 세대주 자격 필수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시 배우자도 세대주 자격 필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 제외

※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제외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결혼한 자녀 및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재혼배우자의 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의 경우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주민등록등본 상 다른 거주지)분리된 배우자와 등분상에 함께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볼 수 없음.
※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는 본인 또는 재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공급신청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있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부양가족 산정사례

세대포함 세대분리

